

【 주간포커스 】

미국 금융개혁법 상원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

진 익 연구위원

지난 5월 20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금융개혁법 상원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보호기구 설치, ② 상업은행의 투자은행업무 제한, ③ 상업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취급 제한, ④ 대형 금융회사 규모 제한, ⑤ 대형 헤지펀드 등록 의무화, ⑥ 자기자본 추가 적립, ⑦ 사후정리제도 강화 등이다. 향후 미국은 G-20 정상회의를 통해 자국의 금융개혁법과 유사한 내용의 금융규제 도입을 회원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. G-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각국의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한편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의안 도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.

□ 지난 5월 20일 미국 상원이 금융개혁법 상원안을 가결함에 따라 조만간 최종적인 금융개혁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됨.

- 동 상원안은 금년 1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볼커 룰(Volcker Rule)과 농산물위원회 링컨 위원장이 제시한 장외파생상품 취급규제 관련 링컨 수정안(Lincoln Amendment)을 법제화
- 동 상원안은 작년 12월 11일 통과된 하원안과 조율을 거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서명할 예정
 - 그러나 금융규제의 집행 계획 수립 및 권한이 미국 금융안정위원회에 대부분 위임되도록 되어 있어 금융개혁법에 의한 규제 내용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.

□ 금융개혁법 상원안의 주요 내용은 ① 소비자보호기구 설치, ② 상업은행의 투자은행업무 제한, ③ 상업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취급 제한, ④ 대형 금융회사 규모 제한, ⑤ 대형 헤지펀드 등록 의무화, ⑥ 자기자본 추가 적립, ⑦ 사후정리제도 강화 등임.

- 불공정 대출, 과도한 수수료 및 이자 부과를 감시할 소비자보호기구 설치

- 하원안은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규정한 반면, 상원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 내에 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규정
- 볼커 룰을 수용하여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업무를 제한
 - 은행,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, 기타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회사가 헤지펀드(hedge fund), 사모펀드(private equity fund), 자기자본매매(proprietary trading) 등과 같은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제한
- 링컨 수정안을 수용하여 상업은행이 장외파생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
 - 또한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하여 딜러 및 주요 거래 참여자, 전자거래플랫폼, 중앙청산기구(CCP: Central Clearing Counter-Parties), 거래소 등에 대해서도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창구 이용,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, 이들에 의한 대출지원이나 자산매입 등이 제한됨.
- 볼커 룰을 수용하여 시장점유율이 10%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대형 금융회사의 규모를 제한
- 투기적 자금흐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운용자산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헤지펀드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(SEC: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) 등록을 의무화
- 대형 금융회사에게 부채의 외부성에 상응하는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요구
 - 추가자본(capital surcharge) 적립과 금융기관책임세(responsibility tax) 부과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자산가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도
- 금융회사 채권자와 주주에게도 손실을 분담시키기 위해 사후 정리제도를 강화
 - 감독기구에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정리권한 부여, 재무부 및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대형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정리권한 부여, 그리고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사전정리계획(funeral plan) 제출을 요구

□ 일각에서는 금융개혁법 상원안에 대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

- 과도한 규제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고 주장
 - 금융개혁법 시행으로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지만 금융산업의 신용창출 기능이 위축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부정적 효과도 수반될 수 있음.
 - 미국 언론(The Wall Street Journal)에 따르면, 투자은행 업무와 장외파생상품 거래 참여가 제한되면 미국 대형 금융회사들의 이윤 규모가 현 수준 대비 약 20%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.

- 상원안의 내용은 투자자 및 금융회사의 유인과 시장원리를 간과하여 대마불사 (TBTF: Too-Big-Too-Fail) 관행을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
 - 사전적으로 정리기금(bailout fund)을 적립하지 않은 채 감독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구제금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감독당국의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개입이 빈번해질 수 있음.
 - 즉,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(SIFI: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)로 규정된 금융회사에 대해 구제금융이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투자자들이 해당 금융회사에 자금을 집중하고 SIFI의 고위험 투자가 오히려 조장될 수 있음.

□ 향후 미국은 자국의 금융개혁법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G-20 정상회의에서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.

- 현재 G-20 정상들은 금융안정위원회(FSB: Financial Stability Board)에 금년 10월까지 SIFI 규제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상태
- 최근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글로벌 수준에서의 규제수단 도입에 유보적이었던 국가들도 미국의 제안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.
 - 미국, 영국, 프랑스 등은 글로벌 규제수단의 도입에 적극적이었고 캐나다, 호주, 개발도상국들은 부작용과 국가별 형평성을 우려하여 소극적이었음.
- 미국 금융개혁법의 최종 내용에 따라 글로벌 수준에서도 금융안정분담금 (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) 중심의 가격규제와 더불어 볼커 룰 중심의 수량규제가 병행될 가능성
 - IMF는 금년 4월 24일 G-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안정분담금과 금융활동세(Financial Activities Tax) 부과 방안을 제안
 - 한편, 제네바협회(Geneva Association)는 세계 80대 보험회사들의 입장을 대표하여 보험회사에게까지 금융안정분담금이나 금융활동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함.

□ 우리나라는 SIFI 규제 수단들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 수단별 장단점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보다 적합한 규제 수단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

- SIFI 규제 방안은 오는 11월 G-20 서울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인데, G-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회원국들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여 합의안 도출을 주도할 필요
 - 현재 논의 중인 SIFI 규제 수단들의 제안 배경을 분석하고 규제 수단별로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이견조율을 위한 쟁점을 정리할 필요
 - 대다수 회원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동 기준에 비추어 규제 수단별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해야 할 것임.
- 우리나라 정책당국은 G-20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, 국내에서도 금융안정분담금과 금융활동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.
 - 글로벌 수준에서 어떤 SIFI 규제수단이 채택되는가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기존 금융정책과도 상충될 수 있음.
- 우리나라는 가격규제 채택을 지지하는 한편 수량규제 채택 시에는 국가별 및 업권별 차별성을 감안한 재량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 - 부채의 외부효과 크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한편 채권자를 보호함으로써 부실 전염은 차단하되 SIFI의 부도는 용인하는 가격규제가 바람직
 - 수량규제 채택 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국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용인할 수 있는 재량권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, 업권별로 부채의 외부효과 크기에 상응하는 차등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.

.KiRi